

지방법원      지원  
보   정   명   령

채무자점소유자

귀하

사      건      20   타경5264   부동산강제경매  
채   권   자      서울  
채   무   자      김  
소   유   자      채무자와 같음

귀하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 
바랍니다.

흠   결   사   항

1. 항고보증금 금6,231,500원(민사집행법 130조 4항에 정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 
62,315,000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 
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), 송달료(14,200원), 인지(2,000원)을 각 납부하  
시기 바랍니다.

2015.      .

판      사

